

포세스 한강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세스 한강’은 주택전시관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포세스 한강 홈페이지(<https://포세스한강.com>) 또는 대표번호(☎1899-7099)에서 방문가능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 예약한 해당 날짜 및 시간 이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12.(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상향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최초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 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포세스 한강 인터넷 홈페이지(www.포세스한강.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인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15만원	35만원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자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4년 01월 24일(수)	2024년 01월 25일(목)	2024년 01월 26일(금)	2024년 02월 01일(목)	02월 02일(금) ~ 02월 13일(화)	02월 15일(목) ~ 02월 17일(토)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10:00 ~ 17:00)	방문계약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제스 한강 주택전시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제스 한강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오기포함)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사업과-23204호(2023.12.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3개동 총 128세대 중 아파트 128세대

[특별공급 34세대(일반[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8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367대(법정 263대)]

■ 입주시기 : 2025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주택형별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682	01	084.9318	84A	84.9318	29.7055	114.6373	112.2188	226.8561	59.0061	7	42	5	4	8	1	4	22	20	-		
				84B	84.9825	29.2930	114.2755	112.2858	226.5613	59.0413	14											
				84C	84.6328	29.5171	114.1499	111.8238	225.9737	58.7983	7											
				84D	84.3536	29.8872	114.2408	111.4548	225.6956	58.6044	8											
				84E	84.1414	29.7852	113.9266	111.1744	225.1010	58.4569	6											
		02	115.4906	115A	115.4906	39.3059	154.7965	152.5956	307.3921	80.2367	15	25	-	3	-	1	-	4	21	-		
				115B	115.3529	40.0311	155.3840	152.4137	307.7977	80.1410	8											
				115C	115.5819	39.7445	155.3264	152.7162	308.0426	80.3001	2											
		03	123.3567	123A	123.3567	42.1115	165.4682	162.9888	328.4570	85.7016	8	23	-	2	-	1	-	3	20	-		
				123B	123.8214	42.0035	165.8249	163.6030	329.4279	86.0245	8											
				126	126.0683	42.4564	168.5247	166.5716	335.0963	87.5855	7											
		04	213.6667	213A	213.6667	71.9186	285.5853	282.3139	567.8992	148.4442	5	31	-	3	-	1	-	4	27	-		
				213B	213.9203	70.7480	284.6683	282.6489	567.3172	148.6204	6											
				213C	213.3349	71.3422	284.6771	281.8754	566.5525	148.2137	7											
				216A	216.3134	73.8478	290.1612	285.8109	575.9721	150.2830	6											
				216B	216.4175	72.8252	289.2427	285.9484	575.1911	150.3553	7											
		05	223.7193	223	223.7193	74.4381	298.1574	295.5961	593.7535	155.4282	5	5	-	1	-	-	-	1	4	-		
		06	244.7652A	244PA	244.7652	89.2856	334.0508	323.4037	657.4545	170.0533	1	1	-	-	-	-	-	-	1	-		
		07	244.9903B	244PB	244.9903	88.8272	333.8175	323.7011	657.5186	170.2097	1	1	-	-	-	-	-	-	1	-		
		합 계											128	128	5	13	8	4	4	34	94	0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 84B, 84C, 84D, 84E, 115A, 115B, 115C, 123A, 123B, 126, 213A, 213B, 213C, 216A, 216B 타입별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신청 시 **전용 84.9318(84A, 84B, 84C, 84D, 84E) ,115.4906(115A, 115B, 115C), 123.3567(123A, 123B, 126), 213.6667(213A, 213B, 213C, 216A, 216B) 주택형별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안내문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및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9318					115.4906			123.3567			213.6667				223.7193	244.7652A	244.9903B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84D	84E	115A	115B	115C	123A	123B	126	213A	213B	213C	216A	216B	223	244PA	244P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홍보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타입	동/호 표기	층	공급 현실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14일 이내	1회(15%)	2회(15%)	3회(15%)	4회(15%)	입주 지정일
											24.06.20	24.09.20	24.12.20	25.04.21	
084.9318	84A	101동 3호	1	1	2,029,111,000	1,470,889,000	-	3,500,000,000	100,000,000	250,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1,050,000,000
			2	1	1,971,136,400	1,428,863,600	-	3,400,000,000	100,000,000	24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1,020,000,000
			3	1	2,029,111,000	1,470,889,000	-	3,500,000,000	100,000,000	250,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1,050,000,000
			4	1	2,087,085,600	1,512,914,400	-	3,600,000,000	100,000,000	260,000,000	540,000,000	540,000,000	540,000,000	540,000,000	1,080,000,000
			5	1	2,203,034,800	1,596,965,200	-	3,800,000,000	100,000,000	280,000,000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1,140,000,000
			6	1	2,376,958,600	1,723,041,400	-	4,100,000,000	100,000,000	310,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1,230,000,000
			7	1	2,492,907,800	1,807,092,200	-	4,300,000,000	100,000,000	330,000,000	645,000,000	645,000,000	645,000,000	645,000,000	1,290,000,000
	84B	102동 3호	1	1	2,029,111,000	1,470,889,000	-	3,500,000,000	100,000,000	250,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1,050,000,000
			2	1	1,913,161,800	1,386,838,200	-	3,300,000,000	100,000,000	230,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990,000,000
			3	1	1,971,136,400	1,428,863,600	-	3,400,000,000	100,000,000	24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1,020,000,000
			4	1	2,029,111,000	1,470,889,000	-	3,500,000,000	100,000,000	250,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1,050,000,000
			5	1	2,145,060,200	1,554,939,800	-	3,700,000,000	100,000,000	270,000,000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1,110,000,000
			6	1	2,318,984,000	1,681,016,000	-	4,000,000,000	100,000,000	3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1,200,000,000
			7	1	2,434,933,200	1,765,066,800	-	4,200,000,000	100,000,000	320,000,000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1,260,000,000
			8	1	2,550,882,400	1,849,117,600	-	4,400,000,000	100,000,000	340,000,000	660,000,000	660,000,000	660,000,000	660,000,000	1,320,000,000
	103동 3호	3	1	1,971,136,400	1,428,863,600	-	3,400,000,000	100,000,000	24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1,020,000,000	
		4	1	2,029,111,000	1,470,889,000	-	3,500,000,000	100,000,000	250,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1,050,000,000	
		5	1	2,145,060,200	1,554,939,800	-	3,700,000,000	100,000,000	270,000,000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1,110,000,000	
		6	1	2,318,984,000	1,681,016,000	-	4,000,000,000	100,000,000	3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1,200,000,000	

115.4906	84C	101동 4호	7	1	2,434,933,200	1,765,066,800	-	4,200,000,000	100,000,000	320,000,000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1,260,000,000	
			8	1	2,550,882,400	1,849,117,600	-	4,400,000,000	100,000,000	340,000,000	660,000,000	660,000,000	660,000,000	660,000,000	1,320,000,000	
		102동 4호	1	1	2,029,111,000	1,470,889,000	-	3,500,000,000	100,000,000	250,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1,050,000,000
			2	1	1,913,161,800	1,386,838,200	-	3,300,000,000	100,000,000	230,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990,000,000
			3	1	1,971,136,400	1,428,863,600	-	3,400,000,000	100,000,000	24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1,020,000,000
			4	1	2,029,111,000	1,470,889,000	-	3,500,000,000	100,000,000	250,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525,000,000	1,050,000,000
			5	1	2,116,072,900	1,533,927,100	-	3,650,000,000	100,000,000	265,000,000	547,500,000	547,500,000	547,500,000	547,500,000	547,500,000	1,095,000,000
	6		1	2,261,009,400	1,638,990,600	-	3,900,000,000	100,000,000	290,000,000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1,170,000,000	
	7	1	2,376,958,600	1,723,041,400	-	4,100,000,000	100,000,000	310,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1,230,000,000		
	84D	102동 4호	1	1	1,971,136,400	1,428,863,600	-	3,400,000,000	100,000,000	24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1,020,000,000
			2	1	1,855,187,200	1,344,812,800	-	3,200,000,000	100,000,000	220,000,000	480,000,000	480,000,000	480,000,000	480,000,000	480,000,000	960,000,000
			3	1	1,913,161,800	1,386,838,200	-	3,300,000,000	100,000,000	230,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990,000,000
			4	1	1,971,136,400	1,428,863,600	-	3,400,000,000	100,000,000	24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510,000,000	1,020,000,000
			5	1	2,058,098,300	1,491,901,700	-	3,550,000,000	100,000,000	255,000,000	532,500,000	532,500,000	532,500,000	532,500,000	532,500,000	1,065,000,000
			6	1	2,203,034,800	1,596,965,200	-	3,800,000,000	100,000,000	280,000,000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570,000,000	1,140,000,000
			7	1	2,318,984,000	1,681,016,000	-	4,000,000,000	100,000,000	3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1,200,000,000
			8	1	2,434,933,200	1,765,066,800	-	4,200,000,000	100,000,000	320,000,000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1,260,000,000
	84E	103동 4호	3	1	1,884,174,500	1,365,825,500	-	3,250,000,000	100,000,000	225,000,000	487,500,000	487,500,000	487,500,000	487,500,000	487,500,000	975,000,000
			4	1	1,913,161,800	1,386,838,200	-	3,300,000,000	100,000,000	230,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990,000,000
			5	1	2,000,123,700	1,449,876,300	-	3,450,000,000	100,000,000	245,000,000	517,500,000	517,500,000	517,500,000	517,500,000	517,500,000	1,035,000,000
			6	1	2,145,060,200	1,554,939,800	-	3,700,000,000	100,000,000	270,000,000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555,000,000	1,110,000,000
			7	1	2,261,009,400	1,638,990,600	-	3,900,000,000	100,000,000	290,000,000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585,000,000	1,170,000,000
			8	1	2,376,958,600	1,723,041,400	-	4,100,000,000	100,000,000	310,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1,230,000,000
	115A	101동 1호	1	1	2,695,818,900	1,776,528,273	177,652,827	4,650,000,000	100,000,000	365,000,000	697,500,000	697,500,000	697,500,000	697,500,000	697,500,000	1,395,000,000
			2	1	2,579,869,700	1,700,118,455	170,011,845	4,450,000,000	100,000,000	345,000,000	667,500,000	667,500,000	667,500,000	667,500,000	667,500,000	1,335,000,000
			3	1	2,637,844,300	1,738,323,364	173,832,336	4,550,000,000	100,000,000	355,000,000	682,500,000	682,500,000	682,500,000	682,500,000	682,500,000	1,365,000,000
			4	1	2,695,818,900	1,776,528,273	177,652,827	4,650,000,000	100,000,000	365,000,000	697,500,000	697,500,000	697,500,000	697,500,000	697,500,000	1,395,000,000
			5	1	2,782,780,800	1,833,835,636	183,383,564	4,800,000,000	100,000,000	380,000,000	720,000,000	720,000,000	720,000,000	720,000,000	720,000,000	1,440,000,000
6			1	2,869,742,700	1,891,143,000	189,114,300	4,950,000,000	100,000,000	395,000,000	742,500,000	742,500,000	742,500,000	742,500,000	742,500,000	1,485,000,000	
7			1	2,927,717,300	1,929,347,909	192,934,791	5,050,000,000	100,000,000	405,000,000	757,500,000	757,500,000	757,500,000	757,500,000	757,500,000	1,515,000,000	
103동 1호		1	1	2,666,831,600	1,757,425,818	175,742,582	4,600,000,000	100,000,000	36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1,380,000,000	
		2	1	2,550,882,400	1,681,016,000	168,101,600	4,400,000,000	100,000,000	340,000,000	660,000,000	660,000,000	660,000,000	660,000,000	660,000,000	1,320,000,000	
			3	1	2,608,857,000	1,719,220,909	171,922,091	4,500,000,000	100,000,000	350,000,000	675,000,000	675,000,000	675,000,000	675,000,000	1,350,000,000	

123.3567	115B	102동 1호	4	1	2,666,831,600	1,757,425,818	175,742,582	4,600,000,000	100,000,000	36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1,380,000,000	
			5	1	2,753,793,500	1,814,733,182	181,473,318	4,750,000,000	100,000,000	375,000,000	712,500,000	712,500,000	712,500,000	712,500,000	1,425,000,000	
			6	1	2,840,755,400	1,872,040,545	187,204,055	4,900,000,000	100,000,000	390,000,000	735,000,000	735,000,000	735,000,000	735,000,000	735,000,000	1,470,000,000
			7	1	2,898,730,000	1,910,245,455	191,024,545	5,000,000,000	100,000,000	40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1,500,000,000
			8	1	2,956,704,600	1,948,450,364	194,845,036	5,100,000,000	100,000,000	410,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1,530,000,000
			1	1	2,771,185,880	1,826,194,655	182,619,465	4,780,000,000	100,000,000	378,000,000	717,000,000	717,000,000	717,000,000	717,000,000	717,000,000	1,434,000,000
			2	1	2,608,857,000	1,719,220,909	171,922,091	4,500,000,000	100,000,000	350,000,000	675,000,000	675,000,000	675,000,000	675,000,000	675,000,000	1,350,000,000
			3	1	2,666,831,600	1,757,425,818	175,742,582	4,600,000,000	100,000,000	36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690,000,000	1,380,000,000
	4	1	2,724,806,200	1,795,630,727	179,563,073	4,700,000,000	100,000,000	370,000,000	705,000,000	705,000,000	705,000,000	705,000,000	705,000,000	1,410,000,000		
	5	1	2,811,768,100	1,852,938,091	185,293,809	4,850,000,000	100,000,000	385,000,000	727,500,000	727,500,000	727,500,000	727,500,000	727,500,000	1,455,000,000		
	6	1	2,898,730,000	1,910,245,455	191,024,545	5,000,000,000	100,000,000	40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1,500,000,000		
	7	1	2,956,704,600	1,948,450,364	194,845,036	5,100,000,000	100,000,000	410,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1,530,000,000		
	8	1	3,014,679,200	1,986,655,273	198,665,527	5,200,000,000	100,000,000	420,000,000	780,000,000	780,000,000	780,000,000	780,000,000	780,000,000	1,560,000,000		
	115C	103동 3호	1	1	2,637,844,300	1,738,323,364	173,832,336	4,550,000,000	100,000,000	355,000,000	682,500,000	682,500,000	682,500,000	682,500,000	1,365,000,000	
	2		1	2,492,907,800	1,642,811,091	164,281,109	4,300,000,000	100,000,000	330,000,000	645,000,000	645,000,000	645,000,000	645,000,000	1,290,000,000		
	123A	102동 2호	1	1	3,205,995,380	2,112,731,473	211,273,147	5,530,000,000	100,000,000	453,000,000	829,500,000	829,500,000	829,500,000	829,500,000	1,659,000,000	
			2	1	3,043,666,500	2,005,757,727	200,575,773	5,250,000,000	100,000,000	425,000,000	787,500,000	787,500,000	787,500,000	787,500,000	1,575,000,000	
			3	1	3,101,641,100	2,043,962,636	204,396,264	5,350,000,000	100,000,000	435,000,000	802,500,000	802,500,000	802,500,000	802,500,000	1,605,000,000	
			4	1	3,159,615,700	2,082,167,545	208,216,755	5,450,000,000	100,000,000	445,000,000	817,500,000	817,500,000	817,500,000	817,500,000	817,500,000	1,635,000,000
			5	1	3,246,577,600	2,139,474,909	213,947,491	5,600,000,000	100,000,000	46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1,680,000,000
			6	1	3,391,514,100	2,234,987,182	223,498,718	5,850,000,000	100,000,000	485,000,000	877,500,000	877,500,000	877,500,000	877,500,000	877,500,000	1,755,000,000
			7	1	3,536,450,600	2,330,499,455	233,049,945	6,100,000,000	100,000,000	510,000,000	915,000,000	915,000,000	915,000,000	915,000,000	915,000,000	1,830,000,000
			8	1	3,681,387,100	2,426,011,727	242,601,173	6,350,000,000	100,000,000	535,000,000	952,500,000	952,500,000	952,500,000	952,500,000	952,500,000	1,905,000,000
	123B	103동 2호	1	1	3,148,020,780	2,074,526,564	207,452,656	5,430,000,000	100,000,000	443,000,000	814,500,000	814,500,000	814,500,000	814,500,000	1,629,000,000	
2			1	2,985,691,900	1,967,552,818	196,755,282	5,150,000,000	100,000,000	415,000,000	772,500,000	772,500,000	772,500,000	772,500,000	1,545,000,000		
3			1	3,043,666,500	2,005,757,727	200,575,773	5,250,000,000	100,000,000	425,000,000	787,500,000	787,500,000	787,500,000	787,500,000	1,575,000,000		
4			1	3,101,641,100	2,043,962,636	204,396,264	5,350,000,000	100,000,000	435,000,000	802,500,000	802,500,000	802,500,000	802,500,000	802,500,000	1,605,000,000	
5			1	3,188,603,000	2,101,270,000	210,127,000	5,500,000,000	100,000,000	450,000,000	825,000,000	825,000,000	825,000,000	825,000,000	825,000,000	1,650,000,000	
6			1	3,333,539,500	2,196,782,273	219,678,227	5,750,000,000	100,000,000	475,000,000	862,500,000	862,500,000	862,500,000	862,500,000	862,500,000	1,725,000,000	
7			1	3,478,476,000	2,292,294,545	229,229,455	6,000,000,000	100,000,000	500,000,000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1,800,000,000	
8			1	3,623,412,500	2,387,806,818	238,780,682	6,250,000,000	100,000,000	525,000,000	937,500,000	937,500,000	937,500,000	937,500,000	937,500,000	1,875,000,000	
126	101동 2호	1	1	3,014,679,200	1,986,655,273	198,665,527	5,200,000,000	100,000,000	420,000,000	780,000,000	780,000,000	780,000,000	780,000,000	1,560,000,000		
		2	1	2,898,730,000	1,910,245,455	191,024,545	5,000,000,000	100,000,000	40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1,500,000,000		

213.6667	213A	101동 3호	3	1	2,956,704,600	1,948,450,364	194,845,036	5,100,000,000	100,000,000	410,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765,000,000	1,530,000,000
			4	1	3,014,679,200	1,986,655,273	198,665,527	5,200,000,000	100,000,000	420,000,000	780,000,000	780,000,000	780,000,000	780,000,000	1,560,000,000
			5	1	3,101,641,100	2,043,962,636	204,396,264	5,350,000,000	100,000,000	435,000,000	802,500,000	802,500,000	802,500,000	802,500,000	1,605,000,000
			6	1	3,246,577,600	2,139,474,909	213,947,491	5,600,000,000	100,000,000	46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1,680,000,000
			7	1	3,391,514,100	2,234,987,182	223,498,718	5,850,000,000	100,000,000	485,000,000	877,500,000	877,500,000	877,500,000	877,500,000	1,755,000,000
	213B	102동 3호	8	1	5,188,726,700	3,419,339,364	341,933,936	8,950,000,000	300,000,000	595,000,000	1,342,500,000	1,342,500,000	1,342,500,000	1,342,500,000	2,685,000,000
			9	1	5,362,650,500	3,533,954,091	353,395,409	9,250,000,000	300,000,000	625,000,000	1,387,500,000	1,387,500,000	1,387,500,000	1,387,500,000	2,775,000,000
			10	1	5,652,523,500	3,724,978,636	372,497,864	9,750,000,000	300,000,000	675,000,000	1,462,500,000	1,462,500,000	1,462,500,000	1,462,500,000	2,925,000,000
			11	1	5,942,396,500	3,916,003,182	391,600,318	10,250,000,000	300,000,000	725,000,000	1,537,500,000	1,537,500,000	1,537,500,000	1,537,500,000	3,075,000,000
			12	1	6,348,218,700	4,183,437,545	418,343,755	10,950,000,000	300,000,000	795,000,000	1,642,500,000	1,642,500,000	1,642,500,000	1,642,500,000	3,285,000,000
	213C	103동 3호	9	1	5,188,726,700	3,419,339,364	341,933,936	8,950,000,000	300,000,000	595,000,000	1,342,500,000	1,342,500,000	1,342,500,000	1,342,500,000	2,685,000,000
			10	1	5,478,599,700	3,610,363,909	361,036,391	9,450,000,000	300,000,000	645,000,000	1,417,500,000	1,417,500,000	1,417,500,000	1,417,500,000	2,835,000,000
			11	1	5,768,472,700	3,801,388,455	380,138,845	9,950,000,000	300,000,000	695,000,000	1,492,500,000	1,492,500,000	1,492,500,000	1,492,500,000	2,985,000,000
			12	1	6,174,294,900	4,068,822,818	406,882,282	10,650,000,000	300,000,000	765,000,000	1,597,500,000	1,597,500,000	1,597,500,000	1,597,500,000	3,195,000,000
			13	1	6,580,117,100	4,336,257,182	433,625,718	11,350,000,000	300,000,000	835,000,000	1,702,500,000	1,702,500,000	1,702,500,000	1,702,500,000	3,405,000,000
	216A	102동 1호	14	1	6,985,939,300	4,603,691,545	460,369,155	12,050,000,000	300,000,000	905,000,000	1,807,500,000	1,807,500,000	1,807,500,000	1,807,500,000	3,615,000,000
			9	1	5,130,752,100	3,381,134,455	338,113,445	8,850,000,000	300,000,000	585,000,000	1,327,500,000	1,327,500,000	1,327,500,000	1,327,500,000	2,655,000,000
			10	1	5,420,625,100	3,572,159,000	357,215,900	9,350,000,000	300,000,000	635,000,000	1,402,500,000	1,402,500,000	1,402,500,000	1,402,500,000	2,805,000,000
			11	1	5,710,498,100	3,763,183,545	376,318,355	9,850,000,000	300,000,000	685,000,000	1,477,500,000	1,477,500,000	1,477,500,000	1,477,500,000	2,955,000,000
			12	1	6,290,244,100	4,145,232,636	414,523,264	10,850,000,000	300,000,000	785,000,000	1,627,500,000	1,627,500,000	1,627,500,000	1,627,500,000	3,255,000,000
216B	103동 1호	13	1	6,696,066,300	4,412,667,000	441,266,700	11,550,000,000	300,000,000	855,000,000	1,732,500,000	1,732,500,000	1,732,500,000	1,732,500,000	3,465,000,000	
		14	1	7,101,888,500	4,680,101,364	468,010,136	12,250,000,000	300,000,000	925,000,000	1,837,500,000	1,837,500,000	1,837,500,000	1,837,500,000	3,675,000,000	
		15	1	7,681,634,500	5,062,150,455	506,215,045	13,250,000,000	300,000,000	1,025,000,000	1,987,500,000	1,987,500,000	1,987,500,000	1,987,500,000	3,975,000,000	
		9	1	5,652,523,500	3,724,978,636	372,497,864	9,750,000,000	300,000,000	675,000,000	1,462,500,000	1,462,500,000	1,462,500,000	1,462,500,000	2,925,000,000	
		10	1	5,942,396,500	3,916,003,182	391,600,318	10,250,000,000	300,000,000	725,000,000	1,537,500,000	1,537,500,000	1,537,500,000	1,537,500,000	3,075,000,000	
216B	103동 1호	11	1	6,232,269,500	4,107,027,727	410,702,773	10,750,000,000	300,000,000	775,000,000	1,612,500,000	1,612,500,000	1,612,500,000	1,612,500,000	3,225,000,000	
		12	1	6,638,091,700	4,374,462,091	437,446,209	11,450,000,000	300,000,000	845,000,000	1,717,500,000	1,717,500,000	1,717,500,000	1,717,500,000	3,435,000,000	
		13	1	7,043,913,900	4,641,896,455	464,189,645	12,150,000,000	300,000,000	915,000,000	1,822,500,000	1,822,500,000	1,822,500,000	1,822,500,000	3,645,000,000	
		14	1	7,623,659,900	5,023,945,545	502,394,555	13,150,000,000	300,000,000	1,015,000,000	1,972,500,000	1,972,500,000	1,972,500,000	1,972,500,000	3,945,000,000	
		9	1	5,536,574,300	3,648,568,818	364,856,882	9,550,000,000	300,000,000	655,000,000	1,432,500,000	1,432,500,000	1,432,500,000	1,432,500,000	2,865,000,000	
216B	103동 1호	10	1	5,826,447,300	3,839,593,364	383,959,336	10,050,000,000	300,000,000	705,000,000	1,507,500,000	1,507,500,000	1,507,500,000	1,507,500,000	3,015,000,000	
		11	1	6,116,320,300	4,030,617,909	403,061,791	10,550,000,000	300,000,000	755,000,000	1,582,500,000	1,582,500,000	1,582,500,000	1,582,500,000	3,165,000,000	
		12	1	6,522,142,500	4,298,052,273	429,805,227	11,250,000,000	300,000,000	825,000,000	1,687,500,000	1,687,500,000	1,687,500,000	1,687,500,000	3,375,000,000	
216B	103동 1호	13	1	6,927,964,700	4,565,486,636	456,548,664	11,950,000,000	300,000,000	895,000,000	1,792,500,000	1,792,500,000	1,792,500,000	1,792,500,000	3,585,000,000	

			14	1	7,333,786,900	4,832,921,000	483,292,100	12,650,000,000	300,000,000	965,000,000	1,897,500,000	1,897,500,000	1,897,500,000	1,897,500,000	3,795,000,000
			15	1	7,913,532,900	5,214,970,091	521,497,009	13,650,000,000	300,000,000	1,065,000,000	2,047,500,000	2,047,500,000	2,047,500,000	2,047,500,000	4,095,000,000
223.7193	223	101동 1호	8	1	6,087,333,000	4,011,515,455	401,151,545	10,500,000,000	300,000,000	750,000,000	1,575,000,000	1,575,000,000	1,575,000,000	1,575,000,000	3,150,000,000
			9	1	6,261,256,800	4,126,130,182	412,613,018	10,800,000,000	300,000,000	780,000,000	1,620,000,000	1,620,000,000	1,620,000,000	1,620,000,000	3,240,000,000
			10	1	6,551,129,800	4,317,154,727	431,715,473	11,300,000,000	300,000,000	830,000,000	1,695,000,000	1,695,000,000	1,695,000,000	1,695,000,000	3,390,000,000
			11	1	6,841,002,800	4,508,179,273	450,817,927	11,800,000,000	300,000,000	880,000,000	1,770,000,000	1,770,000,000	1,770,000,000	1,770,000,000	3,540,000,000
			12	1	7,420,748,800	4,890,228,364	489,022,836	12,800,000,000	300,000,000	980,000,000	1,920,000,000	1,920,000,000	1,920,000,000	1,920,000,000	3,840,000,000
244.7652 A	244 PA	101동 1호	13	1	8,696,190,000	5,730,736,364	573,073,636	15,000,000,000	1,500,000,000	-	2,250,000,000	2,250,000,000	2,250,000,000	2,250,000,000	4,500,000,000
244.9903 B	244 PB	102동 1호	15	1	9,275,936,000	6,112,785,455	611,278,545	16,000,000,000	1,600,000,000	-	2,400,000,000	2,400,000,000	2,400,000,000	2,400,000,000	4,800,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발코니 확장은 현장 공정상 공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으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정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비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주택형별)	084.9318					115.4906			123.3567			213.6667					223.7193	244.7652A	244.9903B	합 계		
	84A	84B	84C	84D	84E	115A	115B	115C	123A	123B	126	213A	213B	213C	216A	216B	223	224PA	224PB			
일반(기관 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					-	-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1		
	장애인					-			-			-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시 거주자(50%)					2			1			2					1	-	-	8		
	경기도 및 인천 거주자(50%)					2			1			1					-	-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8			-			-					-	-	-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	-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4			-			-					-	-	-	4			
합 계					22			4			3			4					1	-	-	3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개정)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청약자격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홀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734 2132 917">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개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 수도권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미적용 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 파양한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관련 증빙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1.12.(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개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개정)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1.12.(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개정)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 및 1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인(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모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p>「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정제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 시에는 주택소유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p>예비입주자 선정</p>	<p>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정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1.24.(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포레스 한강 주택전시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지상1층~지하1층) 	
일반공급	1순위	2024.01.25.(목)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01.26.(금)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발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주택전시관 방문신청 접수자의 경우 해당 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를 지참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광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 청약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2.(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또는 해당지역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을 명시
	○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 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비자 발급내역 및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 불가시 불인정
	○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전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세대원 전원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 세대원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자격입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자격 확인 및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우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통보 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2.(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02.01.(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02.02.(금)~2024.02.13.(화) (10:00~17:00) 장소 - 포제스 한강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지상1층~지하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02.15.(목)~2024.02.17.(토) (10:00~17:00) 장소 - 포제스 한강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지상1층~지하1층)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2.01.(목) ~ 2024.02.10.(토) (10일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2.0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4.02.02.(금) ~ 2024.02.13.(화)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세스 한강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지상1층~지하1층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방문예약제 홈페이지(https://www.포세스한강.com) 전화 : 1899-7099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추후 홈페이지(https://www.포세스한강.com)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공지 (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예정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 제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 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서류(계약 시 필요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일반공급 필요서류	○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포세스 한강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포세스 한강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2.(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증빙서류	본인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비자 발급내역 및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 불가시 불인정
		○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전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세대원 전원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또는 해당지역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을 명시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일반공급 가정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비속(만 30세 이상, 미혼)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서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2.(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방운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③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접수장소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결정세액이 "0"원 또는 환급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첨부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	개별공시지가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
		○	토지등기부등본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 등본 출력
		○	시가표준액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위택스 →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Ⅶ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4.02.15.(목) ~ 2024.02.17.(토) / 10:00 ~ 17:00	포세스 한강 주택전시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지상1층~지하1층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불가)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인감증명서는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포세스 한강 주택전시관에 서식 비치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인지 세액 :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소명자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계약자 본인 발급용)
	○		위임장	계약자	포세스 한강 주택전시관에 서식 비치
	○		신분증, 인장(서명 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12.(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인 계약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 50%씩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인지세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사업주체가 정하며, 계약자들이 다수(공동명)인 경우, 해당 계약자들은 계약자 부담분(50%)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입인지는 전자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외,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억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 35만원)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억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차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4-367516	한국자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2차 계약금 납부계좌		140-014-367516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세대별 가상계좌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10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한국자산신탁(주) 명의의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될 예정이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 방문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주택전시관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이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써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본 부동산거래로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부 부담(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의 경우,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이자후불제)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중도금 대출 불가 등)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해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고지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지)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 앞선 불가 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상 모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 진행되는 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특약”도 소급적으로 실효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공급계약상 위약금과는 별도로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에 따라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자 외 중도금 대출금의 실제 상환 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비용(예시 : 사업주체가 중도금 대출 대위부채 과정에서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 또는 연체료 등), 기타 중도금 대출원리금의 대출기한 내 미변제로 발생하는 연체료 등 제비용(명칭에 구애받지 않음)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 및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미상환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위부채(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수인, 동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공급계약 해제 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계약자의 기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배상)하여야 합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 및 중도금 대출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2024.01.12.)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규정에 의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2개월 까지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의 전매(매매중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제외)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어떠한 보장(전매주선보장, 전매수익보장 등)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 바, 계약자는 향후 사업주체에게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부당한 요구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 시 계약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앞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Ⅷ

추가선택품목 안내

■ 무상 선택옵션

타입	무상 선택옵션			비고
	구분	기본형	선택형	
84A,84B,84C,84D,84E, 115A,115B,115C, 123A,123B,126, 213A,213B,213C, 216A,216B,223, 244A,244B	거실, 주방, 복도	원목마루	타일	-

-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 선택 시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Ⅸ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공급계약 관련사항 (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원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본 아파트는 128세대 (총 7개군, 19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공급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인근 개발계획 문의 또는 사업부지 현장 외부에서 현장여건, 주변 혐오·유해시설 유무,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소음, 조망권, 일조, 진입로, 주변건물 높이, 일조 및 시야간섭 등 주변환경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제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향후 어떠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서울시청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주택전시관 내 모형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분양사업자 및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

- 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세대별 구분 없이 주택군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따른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각 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사업주체가 정하기로 하며, 계약자들이 다수(공동명의)인 경우, 해당 계약자들은 계약자 부담분(50%)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담부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시설 및 공간의 명칭 및 동 번호 등은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매립폐기물 및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간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세대별 등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수인·동의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선수관리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후 해약하거나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및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사업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은 사업시행자 설계기준의 변경, 디자인 개선 등으로 형태, 문양, 줄눈, 색상 등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계획은 관계기관의 정책,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 및 구조물(방음벽, 송전탑, 전신주, 가로수, 한전패드, 가스정압기, 지하차도, 보도육교, 공동구환기구, 변압기, 쓰레기처리장, 버스정류장 등)계획 및 현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미관, 악취, 진동, 백연, 인근도로 통과차량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광장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고, 교육부 정책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계획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및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건·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및 조경 시설물), 바닥포장, 입면 및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현장여건 반영, 구조, 성능, 품질개선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분양 시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인터넷, 모형 등에 표현된 분양목적물의 평면, 치수, 면적, 건축물 마감 및 디자인, 사인, 도로, 조경 및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중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에 대한 수인 및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주택전시관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계약자 등 포함)는 이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내 조경(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 관리 등),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및 디자인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 용도와 통합으로 사용하는 시설(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기계 관련시설 및 사용자 등)의 유지, 보수는 타 용도와 공동으로 해야하며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하자판정 및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 미흡에 따른 자재 또는 시설, 제품 등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공용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부대복리시설 및 실외기실, 보일러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백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해당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연석, 시트, 타일의 경우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재가 가진 특성상의 문제일뿐 하자의 범위는 아님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을 수인·인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 우수조, 저수조, 태양광패널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마감자재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상대적으로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시설물(환기용구조물,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파고라, 문주 및 벽천 등)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은 형태와 디자인이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경비실 및 주차 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량 변경, 위치 이동 등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배에 강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인허가,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기공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거동 내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 계단실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물건 적치 등)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구조 및 천장설비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옥탑부, 벽면 등에 설치 예정인 시행사 브랜드 관련 심벌, 단지명, 동 번호 등 부착물의 설치위치, 수량, 디자인 등은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일반,음식,재활용)는 지상 1층에 설치되며, 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 수량,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품, 식재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수 집수시설, 상하수도 배관, 전기/통신 인입 배관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 및 현장여건 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부위에 하자 발생은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주 택 전 시 관 / 광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에는 [84A, 123A, 216A] 타입의 샘플하우스가 설치되고, 그 외 미설치된 평형 및 타입은 분양안내문을 통해 참고 바라며, 주택전시관 내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분양상담 등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미건립세대 [84B,84C,84D,84E] 타입은 건립세대인 [84A]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이 동일하지만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가구구성, 가구실이, 가구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주택에는 미건립세대 [115A,115B,115C,123B,126] 타입은 건립세대인 [123A]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이 동일하지만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가구구성, 가구실이, 가구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미건립세대 [213A, 213B, 213C, 216B, 223, 244A, 244B] 타입은 건립세대인 [216A]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이 동일하지만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가구구성, 가구실이, 가구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분양 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시행위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 광고홍보물 여부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광고·홍보물이므로 본 단지 및 주변환경 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영상은 샘플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 상품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 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대상이 아니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전시관에 설치 된 모형은 단지 주변현황, 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마감재, 색상, 조경, 식재, 단지 및 도로의 고저차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세대의 샘플 하우스는 필요한 설비 기기, 각 실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디퓨저, 점검구의 개수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 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기계장치, 천장환기구(디퓨저), 수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배수배관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설계기준,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전시관 천장, 벽 등에 설치된 DP용 조명등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 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확인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건식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 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제품으로 실제 본 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유리 등 구성요소의 형태, 재질, 색 채, 사양, 열림(개폐)방향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창호,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의 위치 및 크기는 본 공사 시 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 및 사다리는 위·아래층과 교차되어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우상)으로 시공 및 공급예정이며 그에 따라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설치 및 기재된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제품사양, 형태 등은 변경(자재품 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승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의 TV 설치 방식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전원, 통신, TV용 케이블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단 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출입구는 구천면로에서 진입하는 주출입구 1개소와 아차산로 78길에서 진입하는 부출입구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자 동선이 남측에 인접한 약 40m도로(구천면로)에서 1개소, 북측에 인접한 약 15m도로(아차산로78길)에서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방음벽, 홍수방어벽, 전기시설물(한전패드 등), 가로등, 가로수, 자전거보관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옥외소화전 등의 위치를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승인·동의합니다. • 본 시공 시 토지의 지형지물 및 대지, 인접도로의 경사도에 의해 발생하는 실내·외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차극복을 위한 계단, 경사로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아차산로78길)에 계획된 공공보행동로는 사업지의 북단에서부터 하천구역을 거쳐 한강댐성지구 북측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계획된 공공보행동로는 공공에게 개방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전용화하거나 헨스 등의 시설물 설치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단지 내부를 지나는 공공보행동로의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공동 부담입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공개공지,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옹벽,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정용이 되며, 정용료 납부는 관리구역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동측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가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의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의 도로교통소음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위하여 유리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 방음벽은 약 14.5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조류충돌방지시설 등이 적용되며, 방음벽의 설치 위치 및 높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청 협의 결과 및 준공시 실제 도로소음 측정 등으로 인해 소음저감시설의 방식 또는 방음벽의 높이, 길이, 위치, 형태, 디자인,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기 성능 저하,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시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승인·동의합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성능개선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소유주는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는 아파트 옥상 및 지상, 지하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축물은 아파트 3개동으로 구성되며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 동의 진입부 위치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 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문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는 시공 및 소방 준공 시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정차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쓰레기차량, 응급차량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포장의 마감재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 내부창호 포함)는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단지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환풍, 탐라이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냄새, 진동,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풍의 환기용 D.A 및 제연환풍의 급배기용 D.A는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파고라, 자전거보관소 등)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내부도로, 조경 선형의 변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구에 경고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지상 1층 각 주동 코어 내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1층 주차장 차량 높이 제한은 약 2.7m로 대형 이삿짐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높이는 차량 통로의 높이 기준이며 주차 구간의 일부는 설비 및 구조를 위해 유효높이 2.1m 이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수취함 및 생활폐기물보관소(일반, 음식물, 재활용)는 지상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대형차량(1.5톤 초과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일반,음식물,재활용)는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냄새 및 소음, 분진,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치위치 및 규모, 개소, 형태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동선, 거리 등은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공사의 특성 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각 세대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방음벽 설치로 인해 각 동 1~5층 일부 세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층 세대의 외부공간은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층 세대의 외부공간에 사생활침해, 보안상 이유로 경계벽, 난간 등이 설치됨을 확인합니다. • 대지 동측 경사로(하천구역)는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서울 제1657호,한강,엠디엠플러스)]-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7354)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과정에서 하천구역의 제방형태, 위치, 높이 및 관리용 도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대지의 한강 계획홍수위수는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0-99호)상 18.95m로써, 계획홍수위에 추가로 여유고를 2.0m를 감안한 하천시설(제방:홍수방어벽)을 계획하였습니다. • 대지 동측의 경사로(하천구역)의 공사 완료후, 인가조건에 따라 하천유지관리기관(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시설물 기부채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대지 동측의 경사로(하천구역)는 국가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업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주 동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엘리베이터는 동의 조합형태 및 층수에 따라 2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 호수라인별로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는 저층부 1대(101동 지하3층~지상7층, 102동: 지하3층~지상8층, 103동:지하3층~지상8층), 고층부 1대(101동:지하3층~지상1층, 지상8~지상13층, 102동: 지하3층~지상1층, 지상9~지상15층, 103동: 지하3층~지하1층, 지상9~15층)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공용부의 채광, 환기창호는 주거동의 조합 형태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각 동은 코어당 1호, 2호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각 세대들을 연결하며, 아파트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출입구와 코어와의 거리는 차이가 있음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지상 1층 외부 공간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 공용부의 채광, 환기창호는 주거동의 조합 형태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 및 공용 홀은 동별로 구조적 조건이 상이하여 출입문이나 홀의 크기, 구조,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실 등은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폐박스, 쓰레기봉투, 자전거, 유모차 등 기타 각종 개인물품의 적치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건물의 각층 층고가 상이하여 같은 층수라도 실제 높이가 용도별로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층 층고 : 약 3.15m) • 각 동의 1층과 최상층의 층고는 약 3.3m로 기준층 층고(약 3.15m)와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7층, 12층, 102동 8층, 14층, 103동 2층, 8층 세대의 층고는 약 3.25~3.3m로 상부세대 설비공간으로 인해 기준층 층고(약 3.15m)와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3층, 102동 15층 세대의 층고(약 3.3m)는 설비공간으로 인해 기준층 층고(약 3.15m)와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및 구조를 외관에 브랜드용 건물명칭, 조영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건물 및 각종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분할, 색채, 마감재),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차량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축벽디자인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및 각종 출입구, 각종 시설물, 조명, 사인계획 등의 디자인 및 마감재, 색상 등은 특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중 아파트 브랜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입면패턴, 색상, 로고 등의 디자인 및 위치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시 입주자의 별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인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위치 및 디자인 등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마감재는 페인트, 석재 등이고, 고층부 마감재는 페인트, 금속재, 유리 등으로 되어 있어 위치 및 층수에 따라 마감재가 다르므로 인한 외관 및 빛반사, 현취, 소음 등의 간섭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 등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금속재 난간 등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입면 돌출물로 인해 세대조망의 일부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세대위치를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입면에는 건물형태 및 돌출 구조물로 인한 선홍통, 가스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로 우수배관, 가스배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주방 직배기 관련 외부마감재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 크기와 위치가 층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층은 창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공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옥상층, 축벽에는 경관을 위한 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태양광 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부 대 복 리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지하층에 위치하고, 단지 내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한 계획으로 표기상 지하층이지만 외기에 면해 있어 채광 및 통풍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 제외) • 부대복리시설(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시네마룸, 포커룸, 오너스클럽, 게스트하우스 등)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시공 시 현장여건 및 행정상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시설의 배치, 형태, 내부구조, 면적, 건축계획과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가구, 기구, 비품류, 집기류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지급 품목이 아니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에 포함된 가구 및 기구의 각종비품 집기류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접근동선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일정기간 부대복리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지 하 주 차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주차는 지상(외부)주차가 없으며, 지하1층에서 지하3층까지 총 36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주출입 램프는 102동 서측 1개소와 대지 북측에 부출입 램프 1개소가 있으며, 두 램프의 차량 경사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1층의 출입구 및 주차통로 유효높이는 약 2.7m, 지하2~3층의 유효높이는 약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여성우선주차, 임산부주차, 경차주차, 전기차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계획은 본공사시 인허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콘센트)이 법적개소 이상 계획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수량과 동·층별 배분계획,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주차장의 천장 및 벽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일부 주동 하부 지하층에 팬룸, 기계실, 정화조,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저장소, 제연팬룸, 용역원휴게실, 방재실 등이 설치되며, 장비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동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내에 폐기물 보관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폐기물(대형) 수거를 위한 대형차량(1.5톤 초과차량)은 진입이 불가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1층 주차장은 서비스 차량(택배배출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통행불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 합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전용 및 공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지하층 동출입구 위치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계획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 1층에 각 동 진출입구 인근에 배치되어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무인택배 시스템은 관리사무소 내부서버로 운영됩니다. 향후 원격관리 시스템(관제센터 통화, 문자발송, 카드결제 등)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서비스 비용 및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각 동별 진출입구에는 드림오프존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고지는 지하1층(5개소), 지하2층(5개소), 지하3층(7개소)에 설치되고, 각 차고지에는 차량 2대씩 주차가 가능하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는 세대평면 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계약 세대가 속한 동·층·향별 차이, 주변 개발행위 등의 변화, 계절 등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 조망 예시이미지는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정면, 측면 및 상부에 설치되는 주동 입면 돌출물과 경관조명, 외벽 사인물 및 태양광 패널 등으로 시야 간섭이나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기본 약 2.6m(거실 우물천장 약 2.72m)이며, 본 공사시 세대 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D,84E] 타입은 전열교환기가 현관창고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관창고의 천장고 높이는 약 2.4m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3A,213B,213C,216A,216B,223,244A,244B] 타입은 전열교환기가 두 대 설치(실외기실, 현관창고 혹은 펜트리)될 예정입니다. [213A,213B,213C,216A,216B,223,244A,244B] 타입의 경우,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는 현관창고 혹은 펜트리의 천장고 높이가 약 2.4m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동하부 필로티 인근 저층세대는 필로티 내 비상차량진출입과 입주민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의 바닥 난방 효율이 기준층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상부 세대 및 인근 세대는 부대복리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등 기준층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추후 별도설치를 위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콘센트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설치가능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제품 설치 불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욕실, 펜트리 및 세탁실 등의 단차 부위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거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으나 이는 하자와 무관함을 확인·수인 합니다. 본 단지는 하향식 피난구(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가 설치되며, 비상시 하향식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의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의 개폐방향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고, 비상시 아래층 전유공간 이용 및 관련법에 따라 문 등에 잠금장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3동 304호는 하부에 필로티가 구성되어 있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의 외부공간을 통해 완강기로 피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 완강기가 설치된 침실의 창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 세대의 경우 외부 출입을 위한 문이 거실에 설치됩니다.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조적 혹은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절골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공사 시 세대 내 마감자재(수전이나 액세서리류 포함)의 설치 위치 및 에어컨 실내기, 전열교환기, 환기구, 욕실팬, 온수분배기, 각종 배수구의 위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커튼박스 천장몰딩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배관 위치로 인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의 생활환경 및 주기적인 실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문은 단열 도어로 설치될 예정이며, 도어의 재질,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내부 그릴 및 환기구 형태, 색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펜트리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구가 함께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 및 내부 마감, 실 천장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세대별로 내부가 아닌 각 층 공용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창실 등 도어에는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자재특성상(은 성분)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세대 내 콘센트, 스위치, 조명,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규격 등은 시공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세대의 경우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과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시간, 장소별 조도 및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주방가구, 욕조 하부, 샤워실 및 양변기 하부 등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냉방은 세대별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수량 및 용량 등은 타입, 호수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가구 및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101동: 8층, 13층세대/102동: 9층, 15층세대/103동: 3층, 9층세대)의 경우 층상배관이 적용되며 하자 발생시 욕실 바닥 철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층상배관을 적용한 공간(욕실, 주방 및 세탁실 등)은 배수구 부분의 봉수가 마를 경우 배관에서 냄새가 바로 올라올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약간을 물을 다시 부어주면 냄새가 차단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7층, 12층, 102동 8층, 14층, 103동 2층, 8층 세대는 상부층이 층상배관 적용되어, 커튼박스 및 에어컨,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가 동일타입의 세대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호 및 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창호는 커튼월 및 PVC 창으로 구성됩니다. • 세대 창호는 접합유리 혹은 접합유리난간으로 설치되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충격 시 접합유리 혹은 접합유리난간이 파손되거나 프레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주방 PVC창은 철제 난간으로 시공됩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크기,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부 석재 및 커튼월 등 외부특화 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부 창호(샷시)의 손잡이는 추후 본 시공 시 사용성 및 미관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등에 따른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알루미늄슬라이딩 도어는 제품 특성상 중문 문짝과 벽체 사이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음, 기밀성능이 없는 제품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알루미늄슬라이딩 도어는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일반,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 아트월 등에 사용된 인조석재 및 타일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된 아일랜드장은 위치를 옮길 경우 전기 배관 및 전선이 바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 소등 스위치로 소등이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공된 확장형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시공 중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저하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평면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히통, 선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난방은 각 세대별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으로 별도의 공용의 보일러실에서 관리되어 공급하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하셔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연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현관창고 또는 팬트리 천장 내 기계식 환기 장치 설치되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되어 기계식 환기 장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실외기, 보일러, 환기장치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층 주동 출입구 외부에 공용부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 내 온수분배기는 싱크장, 아일랜드장, 현관창고, 세탁실 하부, 급수급탕 분배기는 세대 욕실천장에 설치되고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은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침실, 복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지하층에 다음과 같은 공용설비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방재실, 용역실, 폐기물보관시설, 팬룸, 제연팬룸 / 지하2,3층: 우수조, 정화조, 펌프실, 팬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패드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계량기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재반사항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향후 한전패드, 정압실, 계량기함,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유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구배수 설비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은 아파트 입주자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팬트리(실외기실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설치용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반사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지하에는 지열 설비가 적용되고, 설치 용량 및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지하 1층 헬룸, 지상층, 101/102/103동 EPS/TPS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배관은 인입되어 있으나, 가스레인지 관련 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추가 설치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중 [213A,213B,213C,216A,216B,223,244A,244B] 타입은 가스배관이 보조주방으로만 인입되어 있으며, 추후 주방으로 설비 사용시 관련 공사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펌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수뢰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임의로 냉·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증설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무선리모콘 작동 방식으로 별도의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실내기 1대당 1개)
- 아파트 전열교환기의 스위치는 주방, 현관창고, 팬트리의 전등 스위치 옆과 실외기실 벽면에 무선스위치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 욕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배관에 대한 상세설계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84A,84B,84C,84D,84E,115A,115B,115C,123A,123B,126] 타입은 주방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13A,213B,213C,216A,216B,223,244A,244B] 타입은 주방 후드에 자동식 소화기 장치가 설치됩니다.
- 주방 자동식 소화기 장치 설치를 위해 렌지후드 하부 및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드종류 및 설치 위치에 따라 흡입과 소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내 설치되는 위생기구(수전, 도기, 약세사리)에 수세미나 거친 형걸 등의 사용은 표면에 흡집을 남기므로 삼가해주시고 타일이나 벽면을 닦기 위해 염산, 욕실용품 등 화학약품의 사용시에는 제품에 달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공간 내 비상조명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실외기설치공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 가입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 당 사의 정책에 의해 일부 유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난방, 환기, 가스밸브룩탐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카카오톡App에 연계되는 가전사(삼성전자 등)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연계되는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는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카카오톡 음성인식 내장형 월패드를 통해 음성 인식 제어 및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홈 서비스에 연계된 카카오 서비스 이용 조건은 카카오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 홈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카카오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별도 구축) • 소비자가 구축한 무선인터넷 환경에 따라 IoT 가전제품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업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oT 가전은 카카오 홈에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카카오 홈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을 통해 Android 및 iOS 기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Android OS 8.0 이상 (최소 2 GB RAM 공간), iOS 13.0 이상 지원) 해당 내용은 S/W 업그레이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동,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별도 구축) • 빅스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 계정 로그인 및 데이터 연결이 필요하며, 삼성이 지원하는 언어 및 특정 역량과 방언을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기능 및 특징은 국가, 지역 및 언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체 기록(영상/게임/음성)중, 통화 중, 최대 절전 모드, 긴급 모드, 삼성 키즈 등 특정 상황에서는 빅스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빅스비는 일부 앱에 한하여 지원되며, 추후 지원되는 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휴사에 한정하여 이용 가능하며, 추후 제휴사 및 제휴 품목은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전자 ThinQ(씽큐)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7.0이상 iOS 14.0(iPhone, iPad)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내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LG전자의 ThinQ(씽큐) 앱은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 ThinQ(씽큐) 앱에서 제공된 기능은 모델 및 앱 버전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 방법은 제품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카카오 홈App과의 연동은 당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인허가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성능개선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X	기타사항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 기준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관리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호 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고용부위 내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동주택 (거실, 침실, 주방),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표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	-------------------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광장동 공동주택
건축주 : 한국생산성본부
건축(예정)일 :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동로 188-2, 188-4, 188-13, 187-16, 187-17, 187-18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층 / 128세대
면 적 : 46,771.3168㎡(필지면적: 46,771.3168㎡)
건축물의 수평 범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 / 아파트
설 계 자 : ㈜상남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C-50ED-P-2023-1262-7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 2023.11.22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도공포부고시 제2019-78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2023년 11월 22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1. 광장동 공동주택	인증번호	23-중-예-1-0071
층간연도	1. 20240730	평가자	1. 김재현
주 소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동로 188-2, 188-4, 188-13, 187-16, 187-17, 187-18	인증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층 수	1. 지하3층/지상15층	유효기간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1. 46,771.3168㎡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수평 범도	1.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1. (주)상남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특수재료 사용

CO2 배출량

구분	단위연역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연역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연역당 CO2 배출량 (kg/㎡·년)
냉방	35.6	8.2	22.6	3.9
난방	40.1	65.9	48.3	13.5
급탕	30.7	36.4	26.8	7.4
조명	9.4	6.1	16.9	2.9
환기	-	2.4	6.5	1.1
합계	116.0	119.0	122.1	28.8

■ 단위연역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연역당 에너지량
 ■ 단위연역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연역당 에너지량
 ■ 단위연역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차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역당 에너지량
 ■ 단위연역당 CO2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연역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V)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음(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연역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2)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

제 2023-1607-KP011 호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대상 건축물 : 광장동 공동주택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장동 일박 188-2, 188-4, 188-13
인증등급 : 지능형건축물 4등급

건축환경분야 : 6.6점
 기계설비분야 : 11.0점
 전기설비분야 : 12.6점
 정보통신분야 : 16.6점
 시스템통합분야 : 16.2점
 시설경영관리분야 : 10.2점
총 점 : 73.2점

백률용 73.20%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정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4등급 지능형건축물로 지정되었기에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장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 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3-101-0010400 호	576,898,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주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택주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줌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 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

• 내진 등급 : 1등급, 내진설계 능력 MMI진도 : VII / 최대지반가속도 : 0.1971g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 호	한국자산신탁(주)	(주)엠디엠플러스	디엘이앤씨(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2638752	110111-773680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2021-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변경3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비고
회사명	주식회사 한림건축씨엠 종합건축사사무소				-
감리금액	2,809,400,000원	564,000,000원	282,700,000원	358,600,000원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엠디엠플러스(시행위탁자)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주)엠디엠플러스 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주)엠디엠플러스,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시행위탁자 (주)엠디엠플러스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사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행위탁자인 (주)엠디엠플러스 및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준공전·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디엠플러스 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엠디엠플러스 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원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엠디엠플러스가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앞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주)엠디엠플러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사전방문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 할 계획이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전에 별도 통보예정 입니다.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5년 09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룸), 수영장, 락커룸 및 사우나, 주민회의실, 독서실, 카페, 영화관, 게스트하우스 등
- 부대복리시설 운영 및 이용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포제스한강.com>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지상1층~지하1층

■ 분양문의 : 1899-7099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를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12.(금요일)
특별공급 청약신청		2024.01.24.(수요일)
일반공급 청약신청	1순위	2024.01.25.(목요일)
	2순위	2024.01.26.(금요일)
당첨자발표일		2024.02.01.(목요일)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안내)		2024.02.02.(금요일) ~ 2024.02.13.(화요일) 12일간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2024.02.15.(목요일) ~ 2024.02.17.(토요일) 3일간
공급세대수		총 128세대 (특별공급 34세대 / 일반공급 94세대) [84타입 42세대, 115타입 25세대, 123타입 16세대, 126타입 7세대, 213타입 18세대, 216타입 13세대, 223타입 5세대, 244타입 2세대]